

내부통제기준 중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

1.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식별 및 설정

가. 회사는 이해상충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해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정보교류를 차단하여야 한다.

- (1)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
- (2)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
- (3) 집합투자재산,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

나.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.

- (1) 투자자가 보유한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
- (2)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에 대한 총액과 증권에 대한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
- (3)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
- (4)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라 제공의

- 동의를 받거나,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
- (5) 부동산(지상권·지역권·전세권·임차권·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) 및 특별자산(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)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
 - (6)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중 5영업일이 경과한 정보
 - (7)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

2.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

가.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기준을 고려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을 구분하여 설정한다.

- (1) 생산·취득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
- (2) 금융투자업의 종류 및 경영·부수 업무
- (3) 구체적인 업무특성, 수익구조 및 이해상충 가능성
- (4) 기타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구분 필요성

나. 회사는 동일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에서 특정 사안과 관련하

여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서로 다른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.

다.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(1) 집합투자재산 운용부문

(2) 고유재산 운용부문

3.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

가.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 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나.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은 거래주의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거래를 상시 감시하여야 하며, 회사 및 임직원과 고객 간, 회사와 임직원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다.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은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

용투자상품에 대하여 회사의 계산에 의한 매매 및 임직원의 자기 계산에 의한 매매 등이 제한되도록 하여야 한다.

라.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은 제3항에 따른 매매제한 대상 임직원 범위 등을 정하여 거래제한 상품 목록을 통지하거나 이를 조회하도록 할 수 있다.

4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

가.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파악된 거래를 유형별로 구체화하여 구분한 목록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.

나. 회사는 거래 유형에 따라 거래 중단 고객에 해당 사실의 고지 등 이해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